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7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1가합10467 손해배상(기)
원 고 성◇○ (53년생,여여여 xxxxx)
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_-_
피 고 대한민국
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
소송수행자 허경복, 이○♣, 박승범, 최승천
변 론 종 결 2012. 2. 29.
판 결 선 고 2012. 3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5,144,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. 7. 20.부터 2012. 3. 29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9/10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2008. 10. 27. 20:05경 수원시 팔달구 OO에 있는 중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경기_____호 베르나 승용차(이하 '원고 차량'이라 한다)는 팔달문(남문)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팔달문(남문) 방면에서 동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고, 정억섭이 운전하던_____호 스포티지 승용차(이하 '상대 차량'이라 한다)는 교동 방면에서 팔달문(남문)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,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상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가 발생하였다.

나. 원고는 '이 사건 사고 당시 OO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정억섭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상대 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4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'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2009. 3. 30. 기소되었고, 제1심 법원(수원지방법원 2009고단1273호)은 2009. 11. 5.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고 8월의 형을 선고하고 같은 날 원고를 법정구속 하였으나, 항소심 법원(수원지방법원 2009노5587호)은 2010. 7. 27. 원고가 신호 위반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, 대법원(2010도10687호)이 2010. 11. 11.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(이하 위 형사사건

을 '선행 형사사건'이라 한다).

다. 원고는 법정구속된 2009. 11. 5.부터 보석으로 석방된 2010. 1. 28.까지 85일간 수 원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갑 제22, 23, 38, 3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

살피건대,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본래 피의 자에 대한 권리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,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수사의 진행 여 부, 수사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증거 수집절차에 관하여는 사법 경찰관에게 일정한 재량권이 부여된다 할 수 있으며, 또한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를 기초로 공소제기되고 구속된 자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당해 수사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.

그러나, 사법경찰관은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, 수 집,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 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성실히 수사할 의무가 있 으므로, 증거자료 수집을 함에 있어 공익을 위하여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를 수행할 의 무가 있으며, 만일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 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.

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7, 19호증, 갑 제29 내지 32호증, 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사고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이○♣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하였고,

사고 당사자인 원고와 정역섭 쌍방이 서로 자신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견인차량 기사를 통하여 ♠☆☆로 나선 ♠○○의 ▷♠ 진술만을 듣고 원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판단한 사실, 이○♣는 현장에 함께 나가 ♠☆☆의 진술 내용과 상대방의 진술내용의 진위와 모순점을 따져 보자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고 혼자 사고 현장에 나아가 임의로 사진촬영을 하였을 뿐 원고 차량과 상대 차량이 각 충돌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을 측정하는 등으로 □△△△의 진술의 모순점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사실, 한편 원고의 진정에 따라 수사과정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. 4. 4. 수원중부경찰서장에 대하여 이○♣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기초조사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이○♣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, 이에 따라 수원중부경찰서장은 2011. 4. 25.경 같은 이유로 이○♣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런데, 교통사고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의 진술은 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상당하고, 시간이 경과하면 다른 ♠☆☆를 찾기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♠☆☆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아♥◆◆◆ 진술이 주관적 의사나 판단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아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현장 보존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당◆▲▲의 진술의 일관성, 진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,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고 당사자 쌍방이 서로 자신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례하게 대립하고 있는 반면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가해자가 되는 당사자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한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.

그러나, 이○♣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당사자와 함께 나가 신호주기를 확인하고, 진

행방향, 진행거리 등에 관한 변수를 신중히 ♥■■■■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♠☆☆ 진술의 진위를 따져보는 등 신중한 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♠☆☆ 진술만을 기초로 원고가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단정하고 수사를 종결하였고, 이는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.

따라서,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인 이○♣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3. 손해배상의 범위

가. 일실수입

(1) 수입인정

원고가 2009. 11. 5. 법정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2010. 1. 28.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고는 구금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인 2009. 11. 5.부터 2010. 1. 28.까지의 수입을 상실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.

나아가 그 수입인정에 관하여 보건대, 증인 이□■의 증언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사주카페를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, 노동부의 2009년도 고용형태 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 전경력 서비스 종사자의 소득인 월 1,814,833원(월급여 1,612,000원 + 연간특별급여 2,434,000원/12,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, 이하 같다) 상당의 소득이 있었다 할 것이고, 이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2008. 10. 27.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,144,507원{계산 : 1,814,833원 × (14.5205 - 11.6858)}이 된다.

(2) 원고는,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원 팔달문(남문) 부근에서 5군데의 사주

카페를 운영하였는데, 선행 형사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5군데의 사주카페가 모두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는데, 사주카페의 운영수입은 평일에는 일 50만원, 공휴일에는 일 100만원 정도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□■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.

나. 위자료

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와 성별,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선행 형사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2년간 유·무죄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어 왔으며, 그 과정에서 85일간 구치소에 구금되기도 하는 등 그 동안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원고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의 액수,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위 자료의 수액은 10,000,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5,144,507원과 위자료 10,000,000원을 합한 15,144,5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. 7. 20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. 3. 29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지영

 판사 노연주

 판사 유선우